



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

문서번호	건강관리과-3696
결재일자	2015.3.1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건강생활팀장	건강관리과장	보건소장	
이정선	진정희	김혜심	03/17 김경희	
협조	보건행정팀장 박진수			

2015년 금연구역 지도·점검 계획



성동구보건소
(건강관리과)

2015년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

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, 왕십리광장, 공원 및 전체 음식점 등에서의 금연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금연정책의 구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경과

■ 추진근거
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(금연구역 등)

■ 추진경과
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금연구역 추진현황
 - '13.12.31일까지: 150㎡ 이상인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
 - '14.1.1~12.31일까지: 100㎡ 이상인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
 - '15. 1. 1일부터: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
-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실외 금연구역 지정
 - 지정일: 2015년 1월 1일
 - 지정장소 및 범위

구분	합계	왕십리광장	유치원, 초,중,고교	버스정류소	공원
지정장소 (개소)	459	1	68	380	10
범위		광장 전지역	학교출입문으로 부터 50m	버스표지판경계 부터 10m 이내	공원 전지역



II 추진 방향

- 100㎡ 미만의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실내 금연이행 정착
- 야간 및 주간 상시 점검으로 업주 및 이용자의 금연정책 체감도 향상
- 조례에 의해 지정된 실외 금연구역 점검 및 홍보 강화

III 세부 추진 계획

금연구역 대상 시설수: 6,458개소

- 실외금연구역: 527개소

계	공원	성동문화회관 입구 쉼터	어린이 놀이시설	왕십리광장	학교절대 정화구역	버스정류소	비고
527	47	1	30	1	68	380	

- 실내금연구역: 5,931개소

정부, 자치 단체 청사	공공기관 청사	지방공기업 청사	유치원	초·중·고교	대학교	의료기관	보건소 등	어린이집
63	5	2	29	39	2	380	3	197
청소년 활동시설	어린이 놀이시설	도서관	학원	교통 관련시설	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	음식점	사무용 건축물	공장
3	30	6	274	15	38	3,593	40	160
복합용도 건축물	공연장	관광 숙박업소	대규모 점포	사회 복지시설	게임 제공업소	목욕장	100㎡ 이상 음식점 등	만화 대여업소
485	2	4	13	8	77	27	432	4

2014년 추진결과

구 분	금연구역 지도 점검(건)	과태료 부과 (천원)	민원처리(건) (응답소, 새올민원등)	비 고
실 적	5,719	37,050천원 (373건)	165	

금연시설 지도·점검 인력 현황

구 분	지도점검 및 단속	지도점검 보조	비 고
인원수	행정1, 보건1	공공근로 2	

1 금연시설 단속반 구성 및 운영

- 단속기간: 연중(주간 및 야간)
- 단속대상: 실내 및 실외 금연시설
 - 실내·실외 금연시설에서 흡연시: 과태료 10만원
 - 금연시설(흡연실) 설치기준 미준수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단속 공무원 교육 및 단속 매뉴얼 정비
 -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교육
 - 흡연행위 단속 업무: 단속요령, 과태료부과, 징수절차, 위반자 조치사항 등
- 금연시설 단속반 편성
 - 주간반: 2개반 4명(공무원 2, 공공근로 2)
 - 응답소 및 새올민원 신고사항 민원처리 및 금연시설 지도 점검
 - 야간반: 1개반 5명(담당자 2, 건강관리과 직원 순환근무 12)
 - 응답소 및 새올민원 신고사항 민원처리, PC방 등 상습 민원 신고 지역 집중단속, 흡연자 과태료 부과 등

□ 주요 점검사항

-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
-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
-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행위

□ 위반시 조치

-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,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
 - ※ 1차 위반시 170만원, 2차 위반시 330만원, 3차 위반시 500만원
-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시: 과태료 10만원 부과

□ 과태료부과 사후처리

- 1차 과태료부과 고지서 발송(반송시 공시송달) ⇒ 2차 독촉고지서 발송(반송시 공시송달) ⇒ 3차 체납분 세무1과로 이관처리
 - ※ 과태료부과 절차: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부과

2 **금연지도·점검 협력체계 구축**

- 목 적: 금연시설내 흡연행위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부서 업무에 금연지도·점검 추가

□ 추진배경

-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실시로 단속인력 절대 부족
-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협조체계 구축 절실

□ 추진방법

- 협력부서 업무 수행시 금연지도·점검 병행
 - 흡연행위 발견시: 금연단속반 연락 ⇒ 단속반 출동 ⇒ 과태료 부과

· 단속반 출동 불가시: 흡연자 인적사항 기재 공문 요청 ⇒ 과태료부과

□ 세부 실행계획

- 보건의료과: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보육가족과: 어린이집,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노인청소년과: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문화체육과: 관광숙박업소, 게임제공업소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공원녹지과: 어린이놀이시설 및 공원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주민생활과, 사회복지과: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보건위생과: 공중위생업소,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시 금연단속 병행
- 청소행정과: 담배꽂초 무단투기 단속시 금연단속 병행

3 **홍보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**

□ 추진방향

-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채널 구축
-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시기와 관련한 홍보 제공

□ 계도기간 운영: 2015. 1. 1.~ 6. 30.

□ 홍보방법

- 지면을 통한 홍보: 일간지와 구민 소식지 등에 보도자료 게재
- 멀티미디어 홍보: 전광판, IPTV 등을 통한 홍보
- 교육을 통한 홍보: 초·중·고, 성인 교육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홍보
-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: 현수막, 배너, 어깨띠, 금연안내판 등 홍보
-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: 동사무소 및 공동주택 게시판 활용

□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 순회 캠페인 실시: 구민 혼란 방지

-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, 조례 시행내용 홍보
-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 현수막 설치

IV 소요예산

■ **소요예산: 금25,700천원(국 12,850, 시 3,855, 구 8,995)**

- 사무관리비 23,000천원(국 11,500, 시 3,450, 구 8,050)
- 국내여비 900천원(국 450, 시 135, 구 315)
- 업무추진비 1,800천원(국 900, 시 270, 구 630)

붙임 금연시설 지도점검표 1부. 끝.